

회 사 채 인 수 계 약 서

제1회 무보증 사모 일반사채 인수계약서

주식회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이하 "갑"이라 함)은 2014년 월 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제1회 무보증 사모 일반사채(이하 "본건 사채"라 함)를 인수인(이하 "을"이라 함)이 인수할 것을 의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사채의 발행과 인수)

"갑"는 본건 사채를 대하여 "을"에게 제 3의 조건으로 인수할 것을 의뢰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 2 조 (사채의 인수금액)

사채인수금액 :

제 3 조 (발행조건)

"갑"이 발행하는 본건 사채의 발행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조건

- 가. 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 나.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일반사채
- 다. 사채의 권면총액 : 금 만원
- 라.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본건 사채"의 경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마.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건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바. 사채의 발행총액 :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사.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연 6%로 한다.

단, 사채를 만기시까지 보유할 때는 값이 "본건 사채금"으로 운용하는 투자성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함.

3년 운용수익률	추가 지급 이율
30% 이하	없음.
30.01% ~ 48%	해당 구간의 투자수익 중 50%
48.01% 이상	3년 9%

※ 운용수익률 산정 방식

(대출채권 원리금 총액 + 현재 계좌잔고 - 30일 이상연체건*의 원금합계)-권면총액

권면총액

*개인회생 포함

아. 사채의 원금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1) 이자의 지급은 "본건 사채"의 만기일에 일시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상기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 3) 원금의 상환은 2017년 월 일에 일시 상환하되 "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행회사에게 사채원금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는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액면가액의 95%로 상환한다.

자. 본건 사채의 발행일 및 인수일 : 2014년 월 일

차. 본건 사채의 만기일 : 2017년 월 일

카. 사채 인수대금 납입기일 : 2014년 월 일

타. 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장소 : 제일은행 테헤란로지점

(계좌번호: 437-20-365328, 예금주: (주)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본건 사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한 전 상환을 "갑"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달리 서면으로 상환기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상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본건 사채의 이자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계약에 정하여진 "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갑"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또는 워크아웃절차 등 (이하 "법정관리절차 등"이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갑"이 제기하거나 제3자가 "갑"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청을 한 경우
6. "갑"이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그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7. "갑"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하여 "갑"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즉시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의처리)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6 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서울지방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한다.

제 7 조 (효력발생 등)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 계약체결의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기명날인하고 각자 1 통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갑" 주식회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 길18 심경빌딩 3층
대표이사 강 대 호 (인)

"을" ***
